

메리츠증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계약권유문서

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제 9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8 조(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서면자료 기재사항) 등에 의거,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면자료입니다.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1.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일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투자일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분석 및 투자판단의 일부 일임
(회사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습니다.)
- ②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 등의 결정
- ③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 보고
- ④ 기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투자대상 상품

- ① 투자대상 금융상품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예금·적금·예탁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3 조의 4 제 7 항제 1 호에 따른 예치금, 제 93 조 4 제 7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 조제 3 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② 고객에게 제시해드리는 모델포트폴리오별 유형 및 유형별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 투자비중, 위험도는 <별첨 1>의 모델포트폴리오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임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1. 투자일임의 방법

- ①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재산 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유형을 5개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적합한 2개 이상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합니다.
(단, 매우 낮은 위험 유형은 하나의 모델포트폴리오만 마련할 수 있으며, 특정 유형에 대하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1 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 ③ 고객은 제 2 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릅니다.

- ①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전에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제 4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 회 이상 자산배분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일임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모델포트폴리오별 투자위험도를 고려한 투자일임재산 운용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모델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여부를 검토하고,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적용 당 일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제 4 항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④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합니다.
-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2.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 ① 회사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성향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하고, 고객과 모델포트폴리오 유형 및 운용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만약, 고객이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거나 일임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자성향보다 높은 위험성향의 모델포트폴리오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② 고객은 원하는 경우 투자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델포트폴리오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자산군의 비중 조정 또는 특정종목의 편입)할 수 있으며, 모델포트폴리오 형태로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임형은 가입할 수 없고 중개형(중개업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 항의 운용조건이란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1) 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동의 여부
 - (2) 모델포트폴리오 자산군 투자 비중 변경 또는 특정 종목 편입 요청시 그 운용 지시 내용
 - (3) 기타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따른 요청사항 등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 ①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운용하지 않습니다.
 - (1) 각 모델포트폴리오 자산 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 (2) 각 모델포트폴리오 자산 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나 매우 낮은 위험 유형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제외
 - (3) 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편입하는 행위
- ③ ②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까지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금은 고객에게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상의 기준에 따라 운용합니다.
 - (1)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
 - (2)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개시 시점부터 3 개월까지
 - (3)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만기 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

되는 시점까지

4.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 회사는 매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 하고, 고객은 변경된 내용을 회신하실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위 ① 또는 ② 등의 방식으로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고객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 ④ 고객님께서 위 ①의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않고, ②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최소 예탁자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 예탁자산은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모델포트폴리오별 최소 예탁 자산 등은 약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1. 회사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운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없이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투자자산운용사가 의무 및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고객의 책임과 의무

1. 회사의 책임과 의무

- ① 고객의 성향 등 사전 파악
회사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 및 상담을 통하여 파악합니다.
- ②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회사가 고객의 담당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투자 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비밀유지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정보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 ④ 금지행위
 -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단,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투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지분증권은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경쟁매매로 매수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 2 의 2 에서 정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 (7)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8)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9)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 조 제 2 항 제 3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10)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11)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12)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사채권의 전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13)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 (14)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15)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16)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17)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 받는 행위
- (18)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19)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0)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21)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자산운용사를 교체하는 행위. 다만, 계약서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2)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 호~14 호
- (23) 기타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2. 고객의 책임과 의무

① 통지 의무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서면,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 업무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 서비스의 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 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③ 투자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사항

- (1) 투자일임재산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2) 고객이 목표수익률 또는 손절수익률을 지정하였을 경우 회사는 목표수익률의 달성 또는 손절수익률 이하의 수익률 회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3) 회사는 고객이 제시한 자산배분비율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및 성과보수 산정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의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 산정 방법

수수료는 예탁한 자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초 예탁자산은 현금 또는 실물로 하며 수수료 징수시에는 계좌 내 현금과 유가증권을 당일 종가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수료 체계 및 징수 방법

- ① 투자일임수수료 : 일별 평가금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대로 일할 계산하여 매 분기에 계산된 누적된 금액을 징수합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해당시점까지 누적된 금액을 징수합니다.
- ②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투자일임서비스 유형별 중도해지수수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의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기타수수료 : 각 모델포트폴리오 혹은 운용행태에 따라 투자일임수수료를 제외하고 편입되는 펀드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보수 및 운용성과 측정 등 계좌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별도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지급시기

- ① 투자일임수수료는 분기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징수될 수 있습니다.
- ② 수수료 징수일에 현금자산의 납부가 없을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일임계약 계좌내 자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5.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투자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 측정 등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7.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_ 제세금 공과금, 집합투자증권 운용보수 등 회사 이외의 제삼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재산의 평가기준 및 통보방법

1. 계약 개시시점의 재산형태 및 만료시점에서의 재산반환 형태

- ① 고객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로 회사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금액)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 계좌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투자자산으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자산으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약관」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투자자산으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투자실적의 평가 방법

- ① 자본시장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시가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평가금액 증감률로 합니다.

3. 투자결과에 대한 고객 통보 방법

- ① 회사는 매 분기 1 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내역 등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일임보고서는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30 일 이내에 우편,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1. 투자일임계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 제3조 제1항 제1~2호 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이 모델포트폴리오별로 약관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예탁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일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 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 일 이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고 통지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만료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3.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서 해지 또는 모델포트폴리오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고객의 모든 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합니다.
- ②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중도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금 예정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③ 당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

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만약, 고객이 회사의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전

1. 계좌의 이전

-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전제도는 고객이 가입 금융기관 또는 가입 상품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ⅰ) 기존 계약을 해지, ⅱ) 새로운 계약 체결, ⅲ) 기존 계좌자산의 신규 계좌로의 이전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 금융기관간에 적용되는 간소화·표준화된 절차를 말합니다.
- ② 계좌이전제도에 따라 ISA 고객이 가입 금융기관 또는 가입상품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해지 및 기존 계좌자산의 신규 계좌로의 이전을 조특법 제 91 조 18 제 6 항의 계약해지 또는 재산 인출로 보지 않아,
 - (1) 계좌이전제도에 따라 이전된 계좌에 대해서는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유지되며,
 - (2) 가입기간 계산 등에 있어서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세제혜택 적용에 있어서 기존 계좌가 유지되고 내용 또는 당사자만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적용 범위

-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전은 금융기관 간 계좌이전, 금융기관 내 계좌이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같은 유형내 이전(일임형→일임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도(일임형↔중개형) 이전이 가능합니다.
- ② 계좌이전은 현금이전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금융기관내 신탁형 → 일임형 이전의 경우 현물이전이 법적·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현물이전방식도 가능합니다.

3. 계좌 이전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1 항에 따른 계좌이전이 제한됩니다.
 -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경우. 단, 담보대출 등이 있는 계좌는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이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2) 이전절차 진행 중 계좌이전 신청자가 통화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이전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기존 금융기관에서 통화(해피콜) 등을 통해 신청자의 이전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ISA 계좌 내의 재산 중 일부가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단, 2.적용범위의 ③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5)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계좌인 경우
 - (6) ISA 계좌 내의 재산 중 일부가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계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전액 이전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내 일부 금액의 이전은 제한됩니다.

4. 가입일 적용

계좌이전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및 손익통산과 납입한도 계산의 기산일은 기존 가입 계좌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5. 온라인 계좌 이전

- ① 계좌이전 신청에 있어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이전하는 가입자는 오프라인상의 계좌이전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계좌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신청시 신청서상 이전의사 확인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ISA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유선(녹취), SM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6. 수수료

- ① 가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좌이전 수수료는 수취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계좌이전이 신청되어 해지된 계좌의 경우 계좌이전에 따른 별도의 해지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이로 인한 편입 금융상품별 해지(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1. 투자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 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15~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 ③ 400만원 (200만원) 초과 순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

2. 고객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정받으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의무기간 내에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조특법 제91조의 18제6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 4제12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합니다.

①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2) 해외이주

(3)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

②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또는 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고객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총 납입한도는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이고, 연 납입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입니다.

$$2\text{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text{누적 납입금액}$$

6.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7. 당해 연도 신규 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서민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의 만기 시점 또는 특별해지 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9. 회사는 계약 만기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과정에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일임형)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도해지(상환)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11. 가입자격 부적격 계좌의 처리

- ① 국세청장은 주기적으로 (통상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무자격자 해당 여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무자격자 해당 여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 해당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③ 회사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계좌에 추가입금을 제한하고 이의 신청이 종결된 이후 무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면 세제혜택 소멸 및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고, 해당 계좌를 해지 처리(전액 현금화)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일반과세하는 일임계약으로 전환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임원에 관한 사항

2025.02.24 기준

직 위	성 명	약 력	담당업무	비 고
사장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총 괄	상 근
사장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총 괄	상 근
사외이사	이상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감사위원회 위원장	비상근
사외이사	양재선	법무법인 (유)울촌 파트너변호사	감사위원회 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강완모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감사위원회 위원	비상근

2. 주요 주주에 관한 사항

2025.02.24 기준

성명(상호)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메리츠금융지주(주)	보통주	593,180,579	100.00
계	보통주 및 의결권있는 우선주	593,180,579	100.00

본 사항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항

소 속 점	랩솔루션팀
직책/성명	차장 / 김 소 희
주요 경력	Wrap 운용 및 지원 11 년
자격 여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없습니다.
연 락 처	<u>sohee_kim@meritz.co.kr / (02) 6454-3911</u>

소 속 점	랩솔루션팀
직책/성명	대리 / 이 다 혜
주요 경력	영업점 업무 10 년, Wrap 운용 및 지원 1 년
자격 여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없습니다.
연 락 처	<u>dahye.lee@meritz.co.kr / (02) 6454-3907</u>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19 년 09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20 년 04 월 0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20 년 05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20 년 06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22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23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25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문서는 2025 년 0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투자자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 현황

1. 메리츠 ISA 모델포트폴리오 현황

1-1. 모델포트폴리오 개수 : 총 7 개

1-2.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구조

투자자유형	모델포트폴리오 명칭	투자위험	개수	금융상품군*(운용구조)
이자소득형	메리츠 ISA 이자소득형_A	매우 낮은 위험	1	2 종(MMF) + 1 종(RP)
안정지향형	메리츠 ISA 안정지향형_A 메리츠 ISA 안정지향형_B	낮은 위험	2	2 종(채권형) + 1 종(RP) 2 종(채권혼합형+MMF) + 1 종(RP)
성장지향형	메리츠 ISA 성장지향형_A 메리츠 ISA 성장지향형_B	다소 높은 위험	2	2 종(해외투자형+채권혼합형) 2 종(해외투자형+MMF)
고수익지향형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_A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_B	매우 높은 위험	2	2 종(해외투자형) 2 종(해외투자형+채권혼합형)

*금융상품군은 12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모델포트폴리오 유형 구분 기준 및 운용방식

- 당사의 모델포트폴리오는 모두 '본사운용형' 형태로 운용하며, 각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구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델포트폴리오	운 용 기 준	예상 위험 수준
메리츠 이자소득형_A	이자소득형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기준금리 수준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MMF 또는 예금형 자산을 편입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 현금, 국공채 및 단기회사채 등 단기현금성 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금리변동 리스크 등에 노출되어 기대수익률과 일부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 안정지향형_A	- 최대한 투자원금을 보전하면서 정기예금 금리 보다 조금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 투자자금의 70%를 채권형 펀드(A-이상)에 투자하고 30%를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예금형 자산(RP)에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 채권시장의 변동성 또는 펀드에서 투자하는 개별기업의 재무환경 악화에 따른 시장이자율 상승이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메리츠 안정지향형_B	- 최대한 투자원금을 보전하면서 정기예금 금리 보다 조금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 투자자금의 20%를 채권혼합형 펀드에 투자하여 시중금리+a 수익을 추구하고, - 투자자금의 80%를 MMF와 RP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채권시장의 변동성 또는 펀드에서 투자하는 개별기업의 재무환경 악화에 따른 시장이자율 상승이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메리츠 성장지향형_A	- 투자원금의 손실을 상당 부분 감수하더라도 해외투자형펀드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 투자자금의 50%를 해외투자형 펀드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 투자자금의 50%를 채권혼합형 펀드에 투자하여 시중금리+a 수익을 추구합니다.	- 가격변동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에도 제약이 있는 운용방법입니다.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 및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메리츠 성장지향형_B	- 투자원금의 손실을 상당 부분 감수하더라도 해외투자형펀드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 투자자금의 70%를 해외투자형 펀드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 투자자금의 30%를 MMF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강화하는 운용을 추구합니다.	- 가격변동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에도 제약이 있는 운용방법입니다.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 및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메리츠 고수익지향형_A	- 투자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고수익 기회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 투자자금의 100%를 해외투자형 펀드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 가격 변동성 또는 원금손실 가능성, 환금성 제약, 환위험 등이 가장 높은 운용방법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에 위험 노출이 큼니다.
메리츠 고수익지향형_B	- 투자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고수익 기회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A형대비 안정성을 일부 강화하기위해, - 투자자금의 80%를 해외투자형 펀드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 투자자금의 20%는 채권혼합형펀드에 투자 시종금리+ a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합니다.	- 가격 변동성 또는 원금손실 가능성, 환금성 제약, 환위험 등이 가장 높은 운용방법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위험 노출이 큼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위험 산출 방식

2-1. 금융상품별 위험도 분류 기준

투자위험도	초고위험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고 위험 다소 높은 위험	중 위험 보통 위험	저 위험 낮은 위험	초저위험 매우 낮은 위험
파생결합 증권(사채)	원금비보장형 ELS (종목형) 원금비보장형 DLS (레버리지)	원금비보장형 ELS (지수형) 원금비보장형 DLS (고난도)	ELS/DLS (원금 80%이상 부분 지급형)	ELS/DLS (원금 90%이상 부분 지급형)	원금지급형 ELB/DLB ELS/DLS(원금 95% 이상 부분지급형)	
집합투자증권 (ETF 포함)	파생형, 해외투자형, 부동산, 특별자산	국내주식형	주식혼합형, 원금비보존 ELF/DLF	채권혼합형, 원금부분보존추구 형 ELF/DLF	채권형	국공채형, MMF
예 적 금						예적금, MMDA, 현금성자산
기 타	리 츠					RP
위험가중치	10	9	8	6	4	2

※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존 ELF/DLF 중 기초자산이 해외종목(Index제외), Commodity일 경우에는 위험가중치 10을 부여함.

※ 당사는 ISA 일임운용 자산으로 '국내상장주식'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투자하는 별도 운용지시도 제한됩니다.

2-2.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기준

편입되는 개별 금융상품의 위험가중치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산출합니다.

투자자유형	위험도 산출 기준	위험도
이자소득형	$\sum(\text{편입상품 위험가중치} \times \text{투자금액비중}) \leq 2$	매우 낮은 위험

안정지향형	$\Sigma(\text{편입상품 위험가중치} \times \text{투자금액비중}) \leq 4$	낮은 위험
중립형	$\Sigma(\text{편입상품 위험가중치} \times \text{투자금액비중}) \leq 6$	보통 위험
성장지향형	$\Sigma(\text{편입상품 위험가중치} \times \text{투자금액비중}) \leq 8$	다소 높은 위험
	$\Sigma(\text{편입상품 위험가중치} \times \text{투자금액비중}) \leq 9$	높은 위험
고수익지향형	$\Sigma(\text{편입상품 위험가중치} \times \text{투자금액비중}) \leq 10$	매우 높은 위험

3. 모델포트폴리오별 투자 대상

3-1. 모델포트폴리오별 자산 배분 비중

모델포트폴리오	투자자유형	자 산 배 분 비 중 (%)					위험 자산군 비중	MP 위험값 (20~100)
		2 중(집합투자증권)				1 중(유동성)		
		해외투자	채권혼합	채 권	MMF	RP		
메리츠 이자소득형_A	이자소득형	-	-	-	70%	30%	-	2.0
메리츠 안정지향형_A	안정지향형	-	-	70%	-	30%	-	3.4
메리츠 안정지향형_B		-	20%	-	50%	30%	-	2.8
메리츠 성장지향형_A	성장지향형	50%	50%	-	-	-	50%	8.0
메리츠 성장지향형_B		70%	-	-	30%	-	70%	7.6
메리츠 고수익지향형_A	고수익지향형	100%	-	-	-	-	100%	10.0
메리츠 고수익지향형_B		80%	20%	-	-	-	80%	9.2

※ 금융상품군의 분류 기준

구 분	1 중	2 중	3 중
금융상품	예금·적금·예탁금·예치금(금융투자상품은 제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증권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파생결합증권

- ❖ 각 모델포트폴리오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 각 모델포트폴리오 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나 매우 낮은 위험 유형의 모델포트폴리오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분류 결과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도 이상의 투자자유형 등급을 받은 고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부적합확인서 징구 불가)
- ❖ 상기 모델포트폴리오별 자산배분 비중은 상품편입 과정에서 편입상품별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 각 모델 포트폴리오 편입 상품 특징

편입 상품군	상품별 특징	편입 MP/비중
--------	--------	----------

MMF	-채권투자는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이 발행한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등으로 투자하여 안정성을 강화함 (회사채에는 투자하지 않음) -투자기간이 짧은 상품상 특징을 감안하여 유동성 자산(어음,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등)을 충분히 확보함	이자소득형_A 70% 안정지향형_B 50% 성장지향형_B 30%
RP	-증권사가 국공채 및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수시(단기)투자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함	이자소득형_A 30% 안정지향형_A 30% 안정지향형_B 30%
채권형 펀드	-국채, 통안채, 공사채, 은행채, 우량회사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함 -회사채의 경우 A-이상(기업어음 A2-이상)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및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함 -자본이득에 의한 수익률향상 보다는 만기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춤(적정 듀레이션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종목별 30% 분산 규제를 위해 4개 펀드로 구성할 계획임	안정지향형_A 70%
채권혼합형 펀드	-투자신탁자산의 70% 이상을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내 우량채권(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하고 금리변동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중금리+α수익'을 추구함 -회사채의 경우 A-이상(기업어음 A2-이상)에 투자 -주식편입 비중은 펀드자산의 10~30% 이하로 함 -주식부문은 편입 펀드에 따라 ①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②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장기 투자(BUY&HOLD)전략을 기본으로 함 ③ 공모주펀드의 경우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기관청약에 참여함	안정지향형_B 20% 성장지향형_A 50% 고수익지향형_B 20%
해외투자형 펀드	-펀드자산의 대부분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함 -시장 상황에 따라 섹터별/지역별 투자펀드를 편입할 계획임 ①글로벌헬스케어섹터/소비재섹터 ②선진국(미국,유럽,일본)/이머징(중국,인도,베트남 등) ③글로벌자산배분 등 -환헤지 전략은 펀드에 따라 상이함(환헤지 또는 환노출)	성장지향형_A 50% 성장지향형_B 70% 고수익지향형_A 100% 고수익지향형_B 80%